

일본 신용·대부업(금융) 피해자 단체의 발전 현황과 당면 과제
및 법률 지원에 대해

전국 신용·대부업 생활재건문제 피해자연락협의회
사무국 차장 나베타니 겐이치(鍋谷 健一)

1. ‘대부업법’ 제정 이후의 피해자 운동

① 금융 문제

신용·사채 피해자대책협의회와 피해자연락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운동의 결과, 2007 년에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른바 사라킨(サラ金: 급여생활자 대상 대부업)의 3 대 폐해(고금리·과잉대출·가혹한 채권추심)를 시정하기 위해 연 20%의 상한금리, 연소득의 3 분의 1 을 초과하는 대출 금지, 그리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985 년에 47,504 개에 달했던 대부업체 수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인 2007 년에는 11,832 개로 감소하였고, 5 년 후인 2012 년에는 2,350 개, 2025 년 7 월 말 현재는 1,475 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2007 년 소비자 대상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1 조 1,009 억 엔이었으나, 2024 년에는 3 조 3,031 억 엔으로 약 38%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회사의 대출 잔액은 2007 년의 2 조 5,413 억 엔에서 2024 년에는 10 조 7,864 억 엔으로 약 4.2 배 증가했습니다.

대부업계 전체로 보면, 2007 년에 43 조 6,727 억 엔에서 2024 년에는 41 조 2,240 억 엔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대상 대부업체(주택담보 제외), 신용카드 회사, 신용판매 회사의 합계는 두 시점 모두 약 20 조 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닛케이신문(2025 년 3 월 12 일)은 “소비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대출이 늘어나 11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4 년 12 월 소비자용 무담보 대출은 4.4 조 엔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게 부담이 영향을 미치며, 대손비용도 증가

추세이다.”라고 보도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캐시리스(무현금) 결제 확산과 복잡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휴대전화)을 통해 일상적인 결제를 처리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쇼핑 · 오락 · 도박 · 대출 · 지불뿐만 아니라 지불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담처까지도 인간관계가 아닌 각종 정보가 난립한 스마트폰 검색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결제나 후불 결제와 같이 신용정보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출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국민 전체가 과거보다 훨씬 쉽게 다중 채무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금을 직접 다루지 않고도 다중채무자가 되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 단체는 ‘대부업법’ 제정 이후, 신용 · 사채 문제와 고금리 대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산하거나, 활동 자금이 부족하여 폐쇄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때 전국적으로 최고 89 개 단체에 달했던 피해자 단체는 현재 약 40 여 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피해자연락협회의 최근 활동은 다중채무자 구제운동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과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직접 면담 없이 상업적으로 진행되는 부적절한 채무정리가 일부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 차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 재건을 전제로 한 건전한 채무정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건전한 변호사 · 법무사들과 함께 ‘대량광고사무소에 의한 채무정리 2 차 피해대책전국회의’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조정이나 임의조정 과정에서 향후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고리대금)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환 능력과 저항력 이외에는 아무런 제약을 알지 못한다”라는 선인(先人)의 말처럼, 고금리 대출과 금융 문제는 어떤 사회체제에서도 화폐가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으로서

피해자 단체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② 반(反)빈곤 문제

피해자운동은 다중채무자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 재건이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들은 가계부 작성 지원 활동, 동료 간의 생활 재건 및 불법 사채(야미킨)대응 경험 교류, 도박 의존자 지원과 생활보호제도의 활용,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생활 재건의 핵심 축으로 삼아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2013 년 일본 정부가 생활보호비를 3 년간 총 670 억 엔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수급자 1 만 명이 이의신청에 동참했고, 그중 1,000 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고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 월 27 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정부의 생활보호비 삭감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연락협의회는 반(反)빈곤 운동으로까지 활동의 영역을 넓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일본의 법률지원

① 일본의 법률지원은, 일본 헌법 제 32 조에서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의 지배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미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법률부조 제도는, 민사 분쟁의 당사자 중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지원을 받아, 재판 등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조정 등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절차, 더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교섭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1952 년,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日弁連)는 재단법인

법률부조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재원은 주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민간의 기부로 충당되었습니다.

1958 년, 직접적인 지원 비용에 충당되는 사업비에 대해 국가 보조가 시작되었지만,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협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자금과 사무비는 각 변호사회가 부담했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의 개시에 맞춰 ‘원칙적 전액 상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06 년 4 월에는 일본사법지원센터(이하 ‘법테라스(Law Terrace)’)가 설립되었으며, 2010 년 1 월부터는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면제 제도, 2011 년 4 월부터는 준(準)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면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민사법률부조를 이용할 때의 소득 · 자산 기준]

가족 수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독신	18 만 2,000 엔 이하	180 만 엔 이하

[생활보호 1 급 지역의 경우, 20 만 0200 엔 이하]

2 인 가족	25 만 1,000 엔 이하	250 만 엔 이하
--------	-----------------	------------

[생활보호 1 급 지역의 경우, 27 만 6,100 엔 이하]

3 인 가족	27 만 2,000 엔 이하	270 만 엔 이하
--------	-----------------	------------

[생활보호 1 급 지역의 경우, 29 만 9,200 엔 이하]

4 인 가족	29 만 9,000 엔 이하	300 만 엔 이하
--------	-----------------	------------

[생활보호 1 급 지역의 경우, 32 만 8,900 엔 이하]

③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대납 · 상환제도 = 대출 제도가 아닌 급부제로의 전환이 필요

유럽 주요 국가들은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형)의 ‘급부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2. 변호사 · 법무사(사법서사)의 지나치게 낮은 보수

예를 들어, 동시폐지형 파산 사건의 경우, 법률부조 제도를 이용하면 보수가 10 만~15 만 엔 수준에 불과하지만, 법률부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0 만 엔 이상이 지급된다.

3. 민사법률부조의 적용 범위가 협소함

아동 · 생활보호 등 각종 사회보장 신청 · 정신병원 퇴원 · 범죄 피해자 · 외국인 · 난민 인정 등은 민사법률부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자체 예산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법률지원 사업의 국비 · 공비화 필요성

인구 1인당 법률부조 지출액

영국 1,400~3,500 엔 네덜란드 2,000 엔 덴마크 1,400 엔

노르웨이 1,300 엔 이탈리아 300 엔 일본 210 엔

5. 피해자 단체의 시각

사건을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의뢰인에게는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는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 개선 과제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